



“시민이 행복하고,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”

서울에너지공사

받는곳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임원추천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 제정 보고

1. 관련근거

- 가. 지방공기업법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제3항 및 제7항
- 나. 사규관리규정 제4조(입안)

2. 위와 관련, 사규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.

붙 임 : 1. 임원추천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 전문 1부.
2. 임원추천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 비교검토표 1부.
3. 제9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. 끝.

사원

허수진

김사훈

정록성

김용남

박진성